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전순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50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전순애 의원,
김이석 의원, 이상봉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사항 정비 (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)

3. 개정 규칙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규칙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지 제1호 서식]

[별지 제1호서식]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·제8조에 따름
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		③ 공무원 구분	[] 일반직 [] 특정직()	④직급·계급·직무군 (호봉)
	②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)				
	⑤ 성명	한글	⑥ 주민등록번호		
		한자	⑦ 주소	□□□-□□□	
	⑧ 전화번호(자택)		⑨ 근속기간	년 월	⑩ 정년일
	⑪ 비위·형벌 사항 [] 있음 [] 없음	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		

소속 기관 기재란	⑫ 정년 구분	[]연령정년 []계급정년	⑬ 정년	세(년)		
	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	[] 임기제 [] 별정직 년 월	확인	인사담당관 (인)		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 기간)	년 개월 (년 개월)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		
	⑰ 비위·형벌 사항 확인	[] 있음 [] 없음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			
	확인	인사담당관 (인)	연금담당관 (인)	감사담당관 (인)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
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명예퇴직원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
3. 경력증명서 1부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의회사무국장 직인

달성군의회 의장 귀하

비고: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·연금·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지급결정 및 통보	→	신청인 통지	→	지 급
신청인		소 속 기 관		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		소 속 기 관		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

작성방법

1. ④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⑤란은 해당란([])에 "√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적습니다.
 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⑥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4. ⑬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⑭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6. ⑫ ~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⑱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7. ⑨란은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8. ⑫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9.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날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("√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개 정 안

[별지 제1호 서식]

[별지 제1호서식]

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"√"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·제8조에 따름

신청인 기재란	① 소속		③ 공무원 구분	[] 일반직 [] 특정직()	④직급·계급·직무군 (호봉)
	②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)				
	⑤ 성명	한글	⑥ 생년월일		
		한자	⑦ 주소	□□□-□□□	
	⑧ 전화번호(자택)		⑨ 근속기간	년 월	⑩ 정년일
	⑪ 비위·형벌 사항 [] 있음 [] 없음	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		

소속 기관 기재란	⑫ 정년 구분	[]연령정년 []계급정년	⑬ 정년	세(년)		
	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	[] 임기제 [] 별정직 년 월	확인	인사담당관 (인)		
	⑮ 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 기간)	년 개월 (년 개월)	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		
	⑰ 비위·형벌 사항 확인	[] 있음 [] 없음	[] 비위조사 중 [] 수사진행 중 [] 형사재판 계류 중 []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[] 징계처분 요구 중 [] 징계의결 요구 중 []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[] 형(刑) 확정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 확정 (확정일: 형량:) []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(직무 관련) 형의 선고유예 (선고일: 선고형:)			
	확인	인사담당관 (인)	연금담당관 (인)	감사담당관 (인)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
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명예퇴직원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
3. 경력증명서 1부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의회사무국장 직인

달성군의회 의장 귀하

비고: 1.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·연금·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지급결정 및 통보	→	신청인 통지	→	지 급
신청인		소 속 기 관		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		소 속 기 관		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

작성방법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③란은 해당란([])에 "√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)에 적습니다.
 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4. ③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⑤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6. ⑥ ~ ⑪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⑧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7. ⑤란은 해당란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8. ⑥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9. ⑧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날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⑪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("√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[별지 제3호서식]

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름

소속		공무원 구분	[]일반직(업)제 제외) []특정직() []별정직	직급 · 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(호봉)	
성명	(한글) (한자)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 □□□-□□□				
전화번호 (자택)		최초 임용일	년 월 일	근속기간	년 개월
수당 청구액			산출내용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조기 퇴직원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4호서식) 1부	수수료 없 음

확인	인사담당	(인)
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의회사무국장 직인

달성군의회 의장 귀하

비고: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지급결정 및 통보	→	신청인 통지	→	지 급
신청인		소 속 기 관		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		소 속 기 관		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

[별지 제3호서식]

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름

소속 | 공무원 구분 | []일반직(업)제 제외) []특정직() []별정직 | 직급 · 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(호봉)

성명 | (한글) (한자) | 생년월일

주 소 □□□-□□□

전화번호 (자택) | 최초 임용일 | 년 월 일 | 근속기간 | 년 개월

수당 청구액 | 산출내용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 | 1.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조기 퇴직원(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4호서식) 1부 | 수수료 없 음

확인 | 인사담당 (인)

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의회사무국장 직인

달성군의회 의장 귀하

비고: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 수 → 지급결정 및 통보 → 신청인 통지 → 지 급

신청인 / 소 속 기 관 / 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 / 소 속 기 관 / 지방자치단체의 장 (지방의회의 의장)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(법률)」(2025.4.1. 일부개정, 2025.10.2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 나. ~ 다. (생 략)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② ~ ③ (생 략)